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0호(2020.12.15.)로 지구지정된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동두천시청 공원녹지과(031-860-241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부(02-6908-90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 시**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247,178㎡

(변경) 246,931㎡ (감 247㎡,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면적 축소)

(온천공구역(산220임)제척)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경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변경) [붙임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46,931	-	246,931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057 증)	69,824	79,881	32.3	
	전용주거지역	1,940 감)	1,940	-	-	
	제1종전용주거지역	1,940 감)	1,940	-	-	
	일반주거지역	8,117 증)	71,764	79,881	32.3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4,261	4,261	1.7	
	제2종일반주거지역	8,117 증)	7,076	15,193	6.2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0,427	60,427	24.4	
상업 지역	소 계	619 감)	619	-	-	
	일반상업지역	619 감)	619	-	-	
녹지 지역	소 계	236,255 감)	69,205	167,050	67.7	
	자연녹지지역	236,255 감)	69,205	167,050	67.7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계		-	-	246,931	-	-
-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02 96 370 2,788 3,510 1,542 557 1,511 3,891 11,546 56,821 163,997	지구단위 계획에 의함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 용적률 ( ) 는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허용용적률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㉔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247,178	감)247	246,931	국토부고시 제2020-930호 (2020.12.15.)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li> <li>- 면적: 247,178→246,931㎡ (감 24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기관 협의의견(220번지 온천공 일원 제척)반영에 따른 면적 축소</li> </ul>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다. 면 적 : 246,931㎡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  
고,  
청년·신혼부부·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채용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20. 12. 15. (지구지정 고시일) ~ 2029. 12. 31. (준공 예정일)

나. 채용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합 계		246,931	100.0		
주택건설 용지	소 계	63,973	25.9		
	단 독 주 택 용 지	2,948	1.2		
	공 동 주 택 용 지	소 계	57,741	23.4	2개 블록
		공 공 지 원 민 간 입 대 주 택	47,697	19.3	1개 블록
		일 반 분 양	10,044	4.1	1개 블록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3,284	1.3		
기반시설 용지	소 계	179,772	72.8		
	공 원 녹 지	소 계	163,116	66.1	
		공 원	162,774	66.0	▶중복결정 -저류시설(5,470m <sup>2</sup> ) -체육시설 및 수도시설(6,175m <sup>2</sup> )
		녹 지	342	0.1	1개소
	주 차 장	4,514	1.8	3개소	
	도 로	12,142	4.9		
기타시설 용지	종 교 시 설	3,186	1.3	3개소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계획인구 : 2,883인

나. 주택건설계획 : 1,253호(단독주택 : 11호, 공동주택 : 1,242호)

구 분	면적(m <sup>2</sup> )	주택규모(m <sup>2</sup> )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비 고	
계	60,689	-	1,253	2,883		
단독주택	2,948	268	11	26		
공동주택	57,741	-	1,242	2,857		
S1	소 계	47,697	-	1,042	2,397	공공지원 민간입대
	60m <sup>2</sup> 이하	11,900	80	327	752	
	60~85m <sup>2</sup>	35,797	110	715	1,645	
B1	60~85m <sup>2</sup>	10,044	110	200	460	일반분양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기정	7 (7)	2,897 (680)	38,269 (3,818)	-	-	-	4 (4)	1,720 (591)	28,457 (2,836)	3 (3)	1,177 (89)	9,812 (982)
	변경	10 (10)	3,191 (1,374)	35,492 (12,142)	-	-	-	5 (5)	1,697 (968)	21,182 (6,592)	5 (5)	1,494 (406)	14,310 (5,550)
중 로	기정	2 (2)	1,358 (387)	17,880 (1,552)	-	-	-	1 (1)	868 (308)	11,744 (585)	1 (1)	490 (79)	6,136 (967)
	변경	5 (5)	1,681 (879)	25,065 (8,737)	-	-	-	2 (2)	871 (480)	14,379 (3,220)	3 (3)	810 (399)	10,686 (5,517)
소 로	기정	5 (5)	1,539 (293)	20,389 (2,266)	-	-	-	3 (3)	852 (283)	16,713 (2,251)	2 (2)	687 (10)	3,676 (15)
	변경	5 (5)	1,510 (495)	10,427 (3,405)	-	-	-	3 (3)	826 (488)	6,803 (3,372)	2 (2)	684 (7)	3,624 (33)

※ ( ) :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

2) 주차장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증) 4,514	4,514	-	
신설	㉔	노외 주차장	동두천시 생연동 산33-3임 일원	-	증) 1,666	1,666	-	
신설	㉕	노외 주차장	동두천시 생연동 224전 일원	-	증) 1,446	1,446	-	
신설	㉖	노외 주차장	동두천 생연동 462-5전 일원	-	증) 1,402	1,402	-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증) 162,774	162,774	-	
신설	㉗	공원	문화 공원	동두천시 생연동 산37번지 일원	-	증) 96,111	96,111	-	저류시설5,6 중복결정
신설	㉘	공원	문화 공원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3번지 일원	-	증) 66,663	66,663	-	체육시설2, 수도공급 설비시설1, 저류시설7 중복결정

2) 녹지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342	342	-	
신설	㉔	녹지	경관녹지	동두천시 생연동 460-1번지 일원	-	증) 342	342	-	

다. 유통·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0,572	감) 4,397	6,175	-	
변경	①	수도 공급 설비	생연 배수지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7 일원	10,572	감) 4,397	6,175	경기도고시 제1987-125호 ( '87.05.04)	체육시설2 중복결정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6,175	-	6,175	-	
기정	②	생연 배드민턴장	체육 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7 일원	6,175	-	6,175	동두천시고시 제2007-30호 ( '07.05.28)	수도공급 설비시설1 중복결정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증) 5,470	5,470	-	
신설	⑤	유수지	저류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33-3 일원	-	증) 2,757	2,757	-	문화공원55 중복결정
신설	⑥	유수지	저류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38-6 일원	-	증) 1,234	1,234	-	문화공원55 중복결정
신설	⑦	유수지	저류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41-20 일원	-	증) 1,479	1,479	-	문화공원56 중복결정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환경보전 계획

- 기존 문화공원 내 주요 산림은 보전하고, 지구 동측 생태녹지축은 존치하여 식생 훼손 최소화
- 우수의 침투 및 저류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나. 탄소저감 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에너지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구축
  - 버스이용 원활토록 대중교통체계 마련하고,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 계획을 통해 및 보행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1] (도면게재생략)

[붙임1]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46,931	-	246,931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057 증)	69,824	79,881	32.3	
	전용주거지역	1,940 감)	1,940	-	-	
	제1종전용주거지역	1,940 감)	1,940	-	-	
	일반주거지역	8,117 증)	71,764	79,881	32.3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4,261	4,261	1.7	
	제2종일반주거지역	8,117 증)	7,076	15,193	6.2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0,427	60,427	24.4	
상업 지역	소 계	619 감)	619	-	-	
	일반상업지역	619 감)	619	-	-	
녹지 지역	소 계	236,255 감)	69,205	167,050	67.7	
	자연녹지지역	236,255 감)	69,205	167,050	67.7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계		-	-	246,931	-	-
-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02	지구단위 계획에 의함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96		
			제1종일반주거지역	370		
			제2종일반주거지역	2,788		
			제3종일반주거지역	3,510		
			자연녹지지역	1,542		
			제2종일반주거지역	557		
			자연녹지지역	1,511		
			제1종일반주거지역	3,89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546		
			제3종일반주거지역	56,821		
			자연녹지지역	163,997		

※ 용적률 ( ) 는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허용용적률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㉓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247,178	감)247	246,931	국토부고시 제2020-930호 (2020.12.15.)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 247,178m <sup>2</sup> →246,931m <sup>2</sup> , 감)247m <sup>2</sup>	○ 관계기관 협의의견(220번지 온천공 일원 제척) 반영에 따른 면적 축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기정	7 (7)	2,897 (680)	38,269 (3,818)	-	-	-	4 (4)	1,720 (591)	28,457 (2,836)	3 (3)	1,177 (89)	9,812 (982)
	변경	10 (10)	3,191 (1,374)	35,492 (12,142)	-	-	-	5 (5)	1,697 (968)	21,182 (6,592)	5 (5)	1,494 (406)	14,310 (5,550)
중 로	기정	2 (2)	1,358 (387)	17,880 (1,552)	-	-	-	1 (1)	868 (308)	11,744 (585)	1 (1)	490 (79)	6,136 (967)
	변경	5 (5)	1,681 (879)	25,065 (8,737)	-	-	-	2 (2)	871 (480)	14,379 (3,220)	3 (3)	810 (399)	10,686 (5,517)
소 로	기정	5 (5)	1,539 (293)	20,389 (2,266)	-	-	-	3 (3)	852 (283)	16,713 (2,251)	2 (2)	687 (10)	3,676 (15)
	변경	5 (5)	1,510 (495)	10,427 (3,405)	-	-	-	3 (3)	826 (488)	6,803 (3,372)	2 (2)	684 (7)	3,624 (33)

※ ( ) :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	15	보조간선	560	대로1-1	중로1-1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제979-435호 (79.10.19)		
변경	중로	2	4	15~20	보조간선	560 (169)	중로1-1	중로1-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25	8~10.5	국지	308 (308)	중로2-4	중로1-14	일반도로	-	동두천시고시 제2015-42호 (15.06.12)		
변경	중로	2	73	15	국지	311 (311)	중로2-4	중로1-1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4	12	보조간선	490 (79)	중로1-14	중로3-3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제987-321호 (87.12.02)		
변경	중로	3	4	12~20	보조간선	490 (79)	중로1-14	중로3-3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68	12	국지	295 (295)	중로2-4	중로2-73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69	12	국지	25 (25)	중로2-73	중로3-68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	8	국지	343 (5)	중로3-4	중로3-4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79-435호 (79.10.19)	지구외 (가각편입)
변경	소로	2	10	8	국지	341 (3)	중로3-4	중로3-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6	8	국지	509 (278)	중로3-4	소로2-1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87-321호 (87.12.02)	
변경	소로	2	16	8	국지	137 (137)	소로2-338	소로2-1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338	8	국지	348 (348)	중로3-4	소로2-1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9	6	국지	242 (5)	중로1-14	중로3-4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87-321호 (87.12.02)	지구외 (가각편입)
변경	소로	3	59	6	국지	241 (4)	중로1-14	중로3-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82	6	국지	445 (5)	중로2-8	중로3-4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87-321호 (87.12.02)	지구외 (가각편입)
변경	소로	3	82	6	국지	443 (3)	중로2-8	중로3-4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	중로2-4	• 도로 선형 변경(일부 확폭) - 폭원 : 15m→15~20m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소로2-325	중로 2-73	• 도로 변경 - 폭원 : 8m→15m (대상지 내 확폭) - 연장 : 308m→311m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중로3-4	중로3-4	• 도로 선형 변경 및 연장 변경(일부 확폭) - 폭원 : 12m→12~20m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	중로3-68	•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295m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	중로3-69	•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25m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소로2-10	소로2-10	•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폭원 : 8m - 연장 : 343→341m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지구외 도로 종점부 변경
소로2-16	소로2-16	•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폭원 : 8m - 연장 : 509→137m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	소로2-338	•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348m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소로3-59	소로3-59	•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폭원 : 6m - 연장 : 242→241m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지구외 도로 종점부 변경
소로3-82	소로3-82	•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폭원 : 6m - 연장 : 445→443m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지구외 도로 종점부 변경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증) 4,514	4,514	-	
신설	㉔	노외 주차장	동두천시 생연동 산33-3임 일원	-	증) 1,666	1,666	-	
신설	㉕	노외 주차장	동두천시 생연동 224전 일원	-	증) 1,446	1,446	-	
신설	㉖	노외 주차장	동두천 생연동 462-5전 일원	-	증) 1,402	1,402	-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㉔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1,666m <sup>2</sup>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㉕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1,446m <sup>2</sup>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㉖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1,402m <sup>2</sup>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증) 162,774	162,774	-	
신설	㉕	공원	문화 공원	동두천시 생연동 산37번지 일원	-	증) 96,111	96,111	-	저류시설5,6 중복결정
신설	㉖	공원	문화 공원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3번지 일원	-	증) 66,663	66,663	-	체육시설2, 수도공급 설비시설1, 저류시설7 중복결정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㉕	문화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96,111m <sup>2</sup>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㉖	문화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66,663m <sup>2</sup>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나)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342	342	-	
신설	㉔	녹지	경관녹지	동두천시 생연동 460-1번지 일원	-	증) 342	342	-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㉔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342m <sup>2</sup>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0,572	감) 4,397	6,175	-	
변경	①	수도 공급 설비	생연 배수지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7 일원	10,572	감) 4,397	6,175	경기도고시 제1987-125호 ( '87.05.04)	체육시설2 중복결정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수도공급설비	• 면적축소 - 10,572m <sup>2</sup> →6,175m <sup>2</sup>	• 체육시설 중복결정 외 제외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6,175	-	6,175	-	
기정	②	생연 배드민턴장	체육 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7 일원	6,175	-	6,175	동두천시고시 제2007-30호 ( '07.05.28)	수도공급 설비시설1 중복결정

5) 방재시설

가) 저류시설

○ 저류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증) 5,470	5,470	-	
신설	⑤	유수지	저류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33-3 일원	-	증) 2,757	2,757	-	문화공원55 중복결정
신설	⑥	유수지	저류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38-6 일원	-	증) 1,234	1,234	-	문화공원55 중복결정
신설	⑦	유수지	저류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41-20 일원	-	증) 1,479	1,479	-	문화공원56 중복결정

○ 저류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저류시설	• 저류시설 신설 - 면적 : 2,757m <sup>2</sup>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⑥	저류시설	• 저류시설 신설 - 면적 : 1,234m <sup>2</sup>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⑦	저류시설	• 저류시설 신설 - 면적 : 1,479m <sup>2</sup>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sup>2</sup> )	
계	-	2,948	-	2,948	
단독 주택	R1	1,340	-1	268	연접 2개의 획지 내 1회 합병 가능, 획지 분할 불허
			-2	268	
			-3	268	
			-4	268	
			-5	268	
			-6	268	
	R2	1,608	-1	268	
			-2	268	
			-3	268	
			-4	268	
			-5	268	
			-6	268	

나) 공동주택용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계			57,741	-	57,741	-
공동주택	S1	60m <sup>2</sup> 이하	11,900	-	11,900	획지 합병 및 분할 불허
		60m <sup>2</sup> ~85m <sup>2</sup>	35,797	-	35,797	
		소 계	47,697	-	47,697	
	B1	60m <sup>2</sup> ~85m <sup>2</sup>	10,044	-	10,044	
		소 계	10,044	-	10,044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sup>2</sup> )	
계			-	3,284	
근생	SR1	790	-1	400	연접 2개의 획지 내 1회 합병 가능, 획지 분할 불허
			-2	390	
			소 계	-	
	SR2	1,980	-1	390	
			-2	400	
			-3	400	
			-4	400	
			-5	390	
	소 계		-	1,980	
	SR3	514	-1	514	
소 계		-	514		

라) 종교시설용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계			-	3,186	
종1	-	968	-1	968	획지분할불가
종2	-	1,095	-1	1,095	획지분할불가
종3	-	1,123	-1	1,123	획지분할불가

마) 주차장용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계			-	4,514	
주1	-	1,666	-1	1,666	획지분할불가
주2	-	1,446	-1	1,446	획지분할불가
주3	-	1,402	-1	1,402	획지분할불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2	R1 ~ R2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li>※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지상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40% 이내, 지상 1층 이하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1층 전체를 필로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함)
		1획지당 가구수	○ 5가구 이하(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li> <li>○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동두천시 건축조례” 제3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li> </ul>	
단독1 ~ 단독2	R1 ~ R2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주택의 1층 근생시설 설치시 전면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li> <li>- 건축물의 형태는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li> <li>-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li> <li>-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 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li> <li>-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 공간을 마련하며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li> </ul> </li> <li>○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층의 부대시설의 높이는 평균 1개 층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li> <li>·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i> <li>·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li> <li>-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li> <li>· 경사도는 1:1 ~ 1:3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 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 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 실용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li> <li>· 경사지붕 일부에 평지붕이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li> <li>·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li> <li>-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li> <li>·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li> <li>·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 한다.</li> <li>·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li> <li>○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의 기준을 따른다.</li> <li>-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7장의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li> <li>· 재료,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li> </ul> </li> <li>- 점포주택의 경우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설치토록 하며,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인접부분은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를 조성하거나 경계부 단차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처리한다.</li> </ul> </li> </ul>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S1,B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li>○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따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한다.</li> </ul>
			불허용도
		가구 및 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구분	주택유형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층)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S-1	60㎡이하	30% 이하	220% 이하	20 (해발고도 145m이하)
				60㎡~85㎡	30% 이하	220% 이하	20 (해발고도 145m이하)
			B-1	60㎡~85㎡	30% 이하	220% 이하	20 (해발고도 145m이하)
		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배치시 채광·통풍 및 일조권을 고려하여 배치한다.</li> <li>-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li> </ul> </li> <li>○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사항을 따른다.</li> <li>·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의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대지경계로부터 최소 6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li> <li>-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28조(건축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 및 제29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등에 따른다.</li> </ul> </li> <li>○ 직각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하기 위하여 직각배치 구간을 지정한다.</li> <li>-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1동의 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동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경우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li> </ul> </li> <li>○ 주거동 내 층수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수변화로 인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벽면은 입면디자인을 통하여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li> </ul> </li> <li>○ 주거동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획일적 경관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동 형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 주동형태를 차별화하여 주동형식을 다양화한다.</li> <li>·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한다.</li> </ul> </li> </ul>				
공동	S1,B1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은 판상형, 탑상형을 기준으로 하되, 계단식 판상형, 연도형, 연도형과 탑상형, 탑상형과 판상형의 혼합유형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li> <li>○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필로티 구조를 설치하며 필로티 구조에 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1조 제4항 (필로티 구조)의 규정을 따른다.</li> </ul> </li> <li>○ 입면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동은 기준에 따라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lt;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0%;">최상층부</th> <th style="width: 25%;">기준층부</th> <th style="width: 20%;">지상층부</th> </tr> </thead> <tbody> <tr> <td>16층 이상</td> <td>최상층에서부터 2개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15층~11층</td> <td>최상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10층 이하</td> <td>최상층부 구분 없음</td> <td>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body> </table> <p>○ 외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변을 향하여 측벽이 배치될 경우 단조로운 경관 형성의 방지 및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개념에 따라 창호설치를 권장한다.</li> <li>- 가로변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투명한 재료를 통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업무 이외의 시간에도 자연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세대 내에 외기로 면하는 창호는 이중창 및 기밀성 창호를 권장한다.</li> <li>- 옥상 물탱크나 냉난방 시설, 안테나 등의 부속시설 설치 시에는 외부로의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li> </ul> <p>○ 지붕 및 옥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li> <li>-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i> </ul> <p>○ 색채 및 옥외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의 기준을 따른다.</li> <li>-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7장의 기준을 따른다.</li> </ul> <p>○ 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담장의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한다.</li> <li>-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li> <li>-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써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li> <li>-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li> <li>-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인접부분은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를 조성하거나 경계부 단차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처리한다.</li> </ul>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5층~11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0층 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5층~11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0층 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별표1]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

블록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비고
계	-	57,741	1,242	-	-	-	-	
S-1	소계	47,697	1,042	-	-	-	-	
	60㎡ 이하	11,900	327	80	20 (해발고도145m이하)	30	220	
	60㎡ 초과 85㎡ 이하	35,797	715	110	20 (해발고도145m이하)	30	220	
B-1	소계	10,044	200	-	-	-	-	
	60㎡ 초과 85㎡ 이하	10,044	200	110	20 (해발고도145m이하)	30	220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블락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SR1 ~ SR3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ul> </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해당하는 외벽면을 건축물의 전면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외벽면</li> <li>·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li> <li>· 상기 1항과 2항이 상충되는 경우 1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li> </ul> </li> <li>- 대로급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0 ~ 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단, 경사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건축위원회 및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ul> </li> <li>○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사항을 따른다.</li> <li>-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28조(건축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 및 제29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 등에 따른다.</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로급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0 ~ 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단, 경사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건축위원회 및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 건축물의 형태는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li> <li>-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li> </ul> </li> </ul>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SR1 ~ SR3	형태 및 외관	<p>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 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li> <li>-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li> </ul> <p>○지붕 및 옥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계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li> <li>·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i> <li>·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li> <li>· 옥상의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li> <li>-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토록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li> </ul> <p>○색채 및 옥외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의 기준을 따른다.</li> <li>-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7장의 기준을 따른다.</li> </ul> <p>○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li> <li>-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부득이 설치할 시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li> <li>· 재료,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li> </ul>

라) 종교시설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종교1 ~ 종교3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부속용도</li> <li>-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부속용도</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배치</li> <li>-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토록 한다.</li> <li>- 인접한 획지 및 공원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li> <li>○ 건축선</li> <li>-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사항을 따른다.</li> <li>-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28조(건축선으로부터 피어야 하는 거리) 및 제29조(인접대지 경계선</li> </ul>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등에 따른다.
종교	종교1 ~ 종교3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토록 한다.</li> <li>- 인접한 획지 및 공원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li> <li>- 건축물의 형태는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li> <li>-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li> <li>-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 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li> <li>-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li> <li>-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여 경사로 진입부를 조성한다.</li> </ul> </li> <li>○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토록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li> </ul> </li> <li>○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의 기준을 따른다.</li> <li>-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7장의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li> <li>-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득이 설치할 시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li> <li>· 재료,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li> </ul> </li> </ul> </li> </ul>

마) 주차장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P1 ~ P3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li> <li>○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li> <li>※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주차장 외의 타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li> <li>-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li>-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li> </ul> </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 이	○5층 이하
주차장	P1 ~ P3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li> </ul> </li> <li>○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사항을 따른다.</li> <li>-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28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및 제29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등에 따른다.</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형태는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li> <li>-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li> <li>-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 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li> <li>-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li> <li>-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여 경사로 진입부를 조성한다.</li> </ul> </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li> <li>-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득이 설치할 시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li> <li>· 재료,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li> </ul> </li> </ul> </li> </ul>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R1 ~ R2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3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S1,B1	대지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li>○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b>■</b>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자 교차를 허용한다.</li> <li>○ 부설주차장은 <b>□</b>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b>□</b>등 관련법규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li> <li>○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b>□</b>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b>□</b>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li> <li>○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li> <li>○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b>□</b>“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li> <li>○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등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1.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주택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보행쉼터를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한다.<b>□</b></li> <li>- 그 외의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3조의 제①항 (전면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li> </ul> </li> <li>○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b>□</b>제1편 제1장 제13조 제3항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li> </ul> </li> <li>○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b>□</b>제1편 제1장 제13조의 제4항 (공공조경)의 규정에 따르며, 공원·녹지·산책로·등산로 등과 연계하여 조성한다.</li> <li>- 각각부의 공공조경은 <b>□</b>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과 동두천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li> <li>-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설치한다.</li> </ul> </li> </ul>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SR1 ~ SR3	대지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li>○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장변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li>○ 차량의 출입구는 인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토록 권장한다.</li> <li>○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li> </ul>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과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li> <li>○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에는 입주기업·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신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li> <li>○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인접획지와 합필할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li> <li>○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li> </ul>

라)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종교1 ~ 종교2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과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li> <li>○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에는 입주기업·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신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li> <li>○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li> <li>○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3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li> <li>○ 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li> </ul>

마)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P1 ~ P3	대지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주차장용도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li> <li>○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용지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시 자주식 주차로 하여야 하며 카리프트 등의 기계식 주차장설치는 불허한다.</li> <li>○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노외주차장 주변지역에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용지내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li> <li>○ 주차장용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1층에 확보하고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3%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li> <li>○ 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li> </ul>

-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2. 방재계획(변경없음)

- 가. 하천재해
  - 하천재해
    - 사업대상지내 하천은 없으나 자연유하되는 우수의 유입을 고려한 사업대상지 내 영구저류지 3개소를 설치
- 나. 내수 침수재해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강우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 재해저류지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지 설치
-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산사태 대책
    -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위험을 저감 및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한 재해저감을 위한 사면안정공법 실시

## 라. 재난 예방

## ○ 지진 대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관련 단지내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적용
- 지진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간선도로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 ○ 화재 및 산불대책

- 지진, 화재, 폭발 등 긴급한 재난발생시 시가지내에서 상주인구(주간인구)가 인접 도로를 통하여 적정 시간내에 대피,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대피시 보행에 장애가 없는 통로 계획
- 공원, 녹지, 간선도로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화재확대 방지하고 소방·구조활동 집결의 거점으로 활용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 가. 편입 토지조서 : [붙임2]

나. 토지취득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100% 철거 후 신축

## 4.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 1)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

구 분	합계		동두천시		비 고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계	41	44,279	41	44,279	
임야	19	20,338	19	20,338	
공원	2	13,703	2	13,703	
전	7	6,468	7	6,468	
대지	1	145	1	145	
도로	12	3,625	12	3,625	

## 2) 소관청별 토지조서(동두천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지적	편입	
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90	도	397	145	동두천시
2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91-1	전	82	1	동두천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92-6	도	1,783	3	동두천시
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99-19	도	105	58	동두천시
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221	공	813	685	동두천시
6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224-5	도	1,249	409	동두천시
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57	대	145	145	동두천시
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58-12	전	319	72	동두천시
9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59	전	4,391	4,391	동두천시
1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59-2	전	743	743	동두천시
1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0-2	도	1,366	1,238	동두천시
12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0-3	도	9	9	동두천시
1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1-32	도	81	81	동두천시
1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1-33	도	43	43	동두천시
1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2-32	도	714	664	동두천시
16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2-36	도	350	350	동두천시
1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3-5	도	2,872	15	동두천시
1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4-18	전	1,048	1,048	동두천시
19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4-19	전	185	185	동두천시
2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4-22	도	2,135	610	동두천시
2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4-32	전	28	28	동두천시
22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0-1	공	13,051	13,018	동두천시
2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0-3	임	2,858	906	동두천시
2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0-6	임	209	1	동두천시
2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1-3	임	1,424	286	동두천시
26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2-2	임	1,017	185	동두천시
2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3-6	임	534	115	동두천시
2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3	임	3,793	3,793	동두천시
29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4	임	1,373	1,373	동두천시
3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7	임	6,162	6,162	동두천시
3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8	임	198	198	동두천시
32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9	임	406	406	동두천시
3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20	임	1,033	1,033	동두천시
3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21	임	9	9	동두천시
3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22	임	278	278	동두천시
36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2-2	임	292	292	동두천시
3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2-3	임	100	100	동두천시
3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4-6	임	4,369	4,369	동두천시
39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6-5	임	49	49	동두천시
4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6-6	임	404	404	동두천시
4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6-7	임	379	379	동두천시
계	41개 필지			56,796	44,279	

3)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개소	연장(m)	면적(m <sup>2</sup> )	관리할자	비 고
계	16	1,374	180,728		-
도 로	10	1,374	12,142	동두천시	10개 노선(가각 포함, 현황도로 제외)
중 로	5	879	8,737	동두천시	
소 로	5	495	3,405	동두천시	
공 원	2	-	162,774	동두천시	문화공원 2개소 -존치시설 포함 : 체육시설(6,175m <sup>2</sup> , 수도시설 6,175m <sup>2</sup> ) -저류시설 3개소 공원중복결정 : 5,470m <sup>2</sup>
문화공원	2	-	162,774	동두천시	
녹 지	1	-	342	동두천시	경관녹지 1개소
저류시설	3	-	5,470	동두천시	문화공원 내 중복결정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동두천시장

5.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m <sup>2</sup>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 시기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2,948	11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 이주주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 초과분 : 감정평가액	지구 계획 승인 후	
	공동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60m <sup>2</sup> 이하, 60m <sup>2</sup> ~85m <sup>2</sup>	47,697	1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 거 : 감정평가액 비주거 : 낙찰가격
		일반분양	60m <sup>2</sup> ~85m <sup>2</sup>	10,044	1	실수요자		추첨 주거지원 : 조성원가 <sup>주1)</sup> 일반 :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3,284	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반 시설 용지	주차장		4,514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기타 시설 용지	종교시설용지		3,186	3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합계		71,673	27	-	-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급기준 적용  
 ※ 이주대책대상자 공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주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중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시	동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기정	1	동두천시	생연동	190	도	397	145	동**	-	1/1	-	-	-
기정	2	동두천시	생연동	191-1	전	82	1	동**	-	1/1	-	-	-
기정	3	동두천시	생연동	192-6	도	1,783	3	동**	-	1/1	-	-	-
기정	4	동두천시	생연동	193	답	1,825	1,825	홍**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5	동두천시	생연동	194	전	5,554	5,554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교 ***	1/1	-	-	-
기정	6	동두천시	생연동	195	전	1,570	1,570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교 ***	1/1	-	-	-
기정	7	동두천시	생연동	196	전	4,106	4,106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교 ***	1/1	-	-	-
기정	8	동두천시	생연동	197-1	전	255	255	김**	동두천시 상패동 ***	1/1	-	-	-
기정	9	동두천시	생연동	197-2	전	2,998	2,998	김**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10	동두천시	생연동	197-3	답	717	717	임**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11	동두천시	생연동	197-4	전	2,658	2,658	이**	서울 강동구 성내동 ***	1/1	-	-	-
기정	12	동두천시	생연동	198	전	1,944	1,944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13	동두천시	생연동	199-19	도	105	58	동**	-	1/1	-	-	-
기정	14	동두천시	생연동	199-23	임	6	6	남**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15	동두천시	생연동	199-27	임	1,094	1,094	남**	동두천시 생연동 ***	17,481/ 17,649	-	-	-
								동**	-	168/ 17,649	-	-	-
기정 변경	16	동두천시	생연동	220	임	300	247	김**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	1/1	-	-	-
		동두천시	생연동	220	임	300	0	김**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	1/1	-	-	-
기정	17	동두천시	생연동	221	공	813	685	동**	-	1/1	-	-	-
기정	18	동두천시	생연동	224	전	675	619	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	1/1	-	-	-
기정	19	동두천시	생연동	224-5	도	1,249	409	동**	-	1/1	-	-	-
기정	20	동두천시	생연동	456	전	386	386	김**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643번길 ***	1/1	-	-	-
기정	21	동두천시	생연동	456-1	대	595	595	김**	군포시 산본동 ***	1/1	-	-	-
기정	22	동두천시	생연동	456-2	대	122	122	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1/1	-	-	-
기정	23	동두천시	생연동	457	대	145	145	동**	-	1/1	-	-	-
기정	24	동두천시	생연동	458-8	전	19	19	남**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25	동두천시	생연동	458-9	전	163	163	남**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26	동두천시	생연동	458-12	전	319	72	동**	-	1/1	-	-	-
기정	27	동두천시	생연동	459	전	4,391	4,391	동**	-	743/ 5,134	-	-	-
								신**	동두천시 생연동 ***	4,391/ 5,134	-	-	-
기정	28	동두천시	생연동	459-1	전	1,081	1,081	임**	테네시주 저먼타운시 엘머스트가 ***	1/4	-	-	-
								크**	테네시주 칼리빌시 크레이프빈가 ***	1/4	-	-	-
								홍**	테네시주 저먼타운시 동쪽 파플러가 ***	1/4	-	-	-
								홍**	텍사스주 어스틴시 크로스랜드가 ***	1/4	-	-	-
기정	29	동두천시	생연동	459-2	전	743	743	동**	-	743/ 5,134	-	-	-
								신**	동두천시생연동 ***	4,391/ 5,134	-	-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관리의 종류	
		시	동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5,134				
기정	30	동두천시	생연동	460	전	2,684	2,684	이**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31	동두천시	생연동	460-1	전	80	80	이**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32	동두천시	생연동	460-2	도	1,366	1,238	동**	-	1/1	-	-	-
기정	33	동두천시	생연동	460-3	도	9	9	동**	-	1/1	-	-	-
기정	34	동두천시	생연동	461-3	대	166	166	홍**	동두천시 생연1동 ***	1/1	-	-	-
기정	35	동두천시	생연동	461-26	전	2	2	이**	광명시 철산동***	1/1	-	-	-
기정	36	동두천시	생연동	461-30	임	245	245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	1/1	-	-	-
기정	37	동두천시	생연동	461-31	입	43	43	권**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38	동두천시	생연동	461-32	도	81	81	동**	-	1/1	-	-	-
기정	39	동두천시	생연동	461-33	도	43	43	동**	-	1/1	-	-	-
기정	40	동두천시	생연동	461-38	전	1,342	1,342	홍**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 ***	1/1	동***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	근저당권
기정	41	동두천시	생연동	462-5	전	3,059	3,059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42	동두천시	생연동	462-6	전	183	183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43	동두천시	생연동	462-7	전	577	546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44	동두천시	생연동	462-8	전	3,081	3,081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45	동두천시	생연동	462-28	입	811	811	김**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	3/7	의***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	지상권
								김**	경기도 의정부시 ***	2/7	의***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	근저당권
								김**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	2/7	-	-	-
기정	46	동두천시	생연동	462-29	입	45	45	김**	경기도 의정부시 능곡로26번길 ***	2/7	의***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	근저당권
								김**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	2/7	-	-	-
기정	47	동두천시	생연동	462-30	입	2,108	2,108	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1/1	중***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기정	48	동두천시	생연동	462-31	전	762	215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49	동두천시	생연동	462-32	도	714	664	동**	-	1/1	-	-	-
기정	50	동두천시	생연동	462-36	도	350	350	동**	-	1/1	-	-	-
기정	51	동두천시	생연동	463-1	대	248	248	구**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 ***	1/2	-	-	-
								최**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 ***	1/2	-	-	-
기정	52	동두천시	생연동	463-2	대	378	378	구**	인천 북구 작전동 ***	1/1	-	-	-
기정	53	동두천시	생연동	463-3	대	142	142	구**	동두천시 생연동 ***	1/2	-	-	-
								최**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 ***	1/2	-	-	-
기정	54	동두천시	생연동	463-5	도	2,872	15	동**	-	1/1	윤**	서울 동작구 상도동 ***	가처분
기정	55	동두천시	생연동	464-1	전	2,389	1,396	윤**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	1/2	-	-	-
								황**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	1/2	-	-	-
기정	56	동두천시	생연동	464-2	대	139	139	이**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 ***	1/1	보***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근저당권
기정	57	동두천시	생연동	464-18	전	1,048	1,048	동**	-	1/1	-	-	-
기정	58	동두천시	생연동	464-19	전	185	185	동**	-	1/1	-	-	-
기정	59	동두천시	생연동	464-22	도	2,135	610	동**	-	1/1	-	-	-
기정	60	동두천시	생연동	464-32	전	28	28	동**	-	1/1	-	-	-
기정	61	동두천시	생연동	522-1	학	18,443	290	학**	동두천시생연동 ***	1/1	-	-	-
기정	62	동두천시	생연동	522-16	학	132	49	학**	의정부시 호원동 ***	1/1	-	-	-
기정	63	동두천시	생연동	524	대	833	833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	1/1	-	-	-
기정	64	동두천시	생연동	525	전	2,658	2,658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	1/1	-	-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시	동			공부 면적	편집 면적			성명	주소		
기정	65	동두천시	생연동	526	답	417	417	김**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66	동두천시	생연동	527-2	답	684	684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	1/1	-	-	-
기정	67	동두천시	생연동	527-3	답	1,633	1,633	이**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	1/4	-	-	-
								이**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310번길 ***	1/4	-	-	-
								이**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310번길 ***	1/4	-	-	-
								이**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310번길 ***	1/4	-	-	-
기정	68	동두천시	생연동	527-4	답	2,010	2,010	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	1/1	-	-	-
기정	69	동두천시	생연동	527-6	답	1,548	1,548	강**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	1/1	-	-	-
기정	70	동두천시	생연동	528-2	전	3,303	3,303	전**	부산 동래구 명륜동 ***	1/1	-	-	-
기정	71	동두천시	생연동	529-8	전	26	26	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	1/1	-	-	-
기정	72	동두천시	생연동	30-1	공	13,051	13,018	동**	-	1/1	-	-	-
기정	73	동두천시	생연동	30-3	임	2,858	906	동**	-	1/1	-	-	-
기정	74	동두천시	생연동	30-6	임	209	1	동**	-	1/1	-	-	-
기정	75	동두천시	생연동	30-12	임	1,488	1,488	남**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76	동두천시	생연동	30-13	임	929	929	김**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개로 ***	1/1	-	-	-
기정	77	동두천시	생연동	30-14	임	665	665	김**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개로 ***	1/1	-	-	-
기정	78	동두천시	생연동	31-1	임	14,577	14,577	남**	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134번길 ***	1/1	-	-	-
기정	79	동두천시	생연동	31-3	임	1,424	286	동**	-	1/1	-	-	-
기정	80	동두천시	생연동	32-1	임	5,845	5,845	남**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81	동두천시	생연동	32-2	임	1,017	185	동**	-	1/1	-	-	-
기정	82	동두천시	생연동	33-3	임	13,401	13,401	손**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1/1	-	-	-
기정	83	동두천시	생연동	33-6	임	534	115	동**	-	1/1	-	-	-
기정	84	동두천시	생연동	34-2	임	21,171	21,100	학**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	1/1	-	-	-
기정	85	동두천시	생연동	34-3	임	1,598	76	학**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	1/1	-	-	-
기정	86	동두천시	생연동	35	임	3,323	3,323	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	1/1	-	-	-
기정	87	동두천시	생연동	35-2	임	3,323	3,323	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	1/1	-	-	-
기정	88	동두천시	생연동	35-3	임	3,324	3,324	권**	양주군 백석면 가업리 ***	1/1	-	-	-
기정	89	동두천시	생연동	36	임	3,868	3,868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	1/1	-	-	-
기정	90	동두천시	생연동	37	임	7,636	7,636	송**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	1/1	-	-	-
기정	91	동두천시	생연동	38-1	임	21,351	20,904	유**	서울 동작구 상도동 ***	1/12	-	-	-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	1/12	-	-	-
								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	1/12	-	-	-
								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	1/12	-	-	-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1/12	-	-	-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1/12	-	-	-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1/12	-	-	-
								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	1/12	-	-	-
								조**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2길 ***	1/12	-	-	-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	1/12	-	-	-
								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20길 ***	1/12	-	-	-
조**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	1/12	-	-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시	동			공부 면적	편집 면적			성명	주소		
기정	92	동두천시	생연동	38-2	임	1,091	1,091	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	1/1	-	-	-
기정	93	동두천시	생연동	38-3	임	485	485	구**	인천 북구 작전동 ***	1/1	-	-	-
기정	94	동두천시	생연동	38-6	임	694	694	김**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95	동두천시	생연동	41-1	임	4,302	4,302	임**	테네시주 저먼타운시 엘머스트가 ***	1/1	-	-	-
기정	96	동두천시	생연동	41-5	임	426	426	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1/1	중***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기정	97	동두천시	생연동	41-6	임	6,651	6,651	미**	미합중국 테네시주 저먼타운 ***	1/1	-	-	-
기정	98	동두천시	생연동	41-8	임	160	160	미**	미합중국 테네시주 저먼타운 엘머스트 ***	1/1	-	-	-
기정	99	동두천시	생연동	41-13	임	3,793	3,793	동**	-	1/1	-	-	-
기정	100	동두천시	생연동	41-14	임	1,373	1,373	동**	-	1/1	-	-	-
기정	101	동두천시	생연동	41-17	임	6,162	6,162	동**	-	1/1	-	-	-
기정	102	동두천시	생연동	41-18	임	198	198	동**	-	1/1	-	-	-
기정	103	동두천시	생연동	41-19	임	406	406	동**	-	1/1	-	-	-
기정	104	동두천시	생연동	41-20	임	1,033	1,033	동**	-	1/1	-	-	-
기정	105	동두천시	생연동	41-21	임	9	9	동**	-	1/1	-	-	-
기정	106	동두천시	생연동	41-22	임	278	278	동**	-	1/1	-	-	-
기정	107	동두천시	생연동	42	임	5,165	5,165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	1/1	-	-	-
기정	108	동두천시	생연동	42-2	임	292	292	동**	-	1/1	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가압류
기정	109	동두천시	생연동	42-3	임	100	100	동**	-	1/1	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가압류
기정	110	동두천시	생연동	42-8	임	453	453	권**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111	동두천시	생연동	42-9	임	745	745	라**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1	-	-	-
기정	112	동두천시	생연동	42-10	임	980	980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	1/1	-	-	-
기정	113	동두천시	생연동	43-1	임	9,699	2,213	학**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	1/1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14	동두천시	생연동	43-3	임	1,124	371	학**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	1/1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15	동두천시	생연동	43-4	임	3,210	3,210	학**	동두천시 생연동 ***	1/1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16	동두천시	생연동	44-1	임	300	300	학**	동두천시 생연동 ***	1/1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17	동두천시	생연동	44-5	임	12,032	6,984	학**	동두천시 생연동 ***	1/1	동***	-	압류
기정	117	동두천시	생연동	44-5	임	12,032	6,984	-	-	-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18	동두천시	생연동	44-6	임	4,369	4,369	동**	-	1/1	-	-	-
기정	119	동두천시	생연동	44-7	임	74	74	학**	동두천시 생연동 ***	1/1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20	동두천시	생연동	45-3	임	3,848	3,848	김**	군포시 산본동 ***	1/1	-	-	-
기정	121	동두천시	생연동	45-4	임	93	93	김**	군포시 산본동 ***	1/1	-	-	-
기정	122	동두천시	생연동	46-1	임	7,748	7,748	남**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123	동두천시	생연동	46-4	임	124	124	남** 동**	동두천시 생연동 *** -	91/124 33/124	-	-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시	동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기정	124	동두천시	생연동	46-5	임	49	49	동**	-	1/1	-	-	-
기정	125	동두천시	생연동	46-6	임	404	404	동**	-	1/1	-	-	-
기정	126	동두천시	생연동	46-7	임	379	379	동**	-	1/1	-	-	-